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생략) ②(생략)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u>유지관리</u>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사육자의 의무) <u>유지관리하기</u><u>위하여 월 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여</u> 가축의.....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제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생략)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은 <u>1월 이내에 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을</u>..... ②(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1. 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0월 12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76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2000년 10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이종현)

가. 제정이유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소송 이전에 행정 당국의 사전 조정을 거쳐 주민들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화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
 -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 구청장이 위촉하는 아래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구성인원 : 15인 이내
- 심사·조정대상 -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분쟁
 -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와 관련된 분쟁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와 관련된 분쟁
 -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민창규)

현대생활에서 공동주택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추세이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고 주민과의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46
----------	-----

제출년월일 : 2000. 10. 12.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소송 이전에 행정당국의 사전 조정을 거쳐 주민들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화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위원회 구성】

-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 구청장이 위촉하는 아래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구성인원 : 15인 이내

【 심사·조정대상 】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분쟁
-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와 관련된 분쟁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와 관련된 분쟁
-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3. 참고사항

- 관련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제 정 안 : 별 첨

별첨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조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심사·조정대상)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분쟁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와 관련된 분쟁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와 관련된 분쟁
4.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조정신청의 통지)

-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거부 및 중지)

-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

-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조정 전 합의)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

-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는 당해 조정청구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조정청구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 12조(비용의 부담)

-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등포구 규칙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